

서울고등법원 2022. 2. 16 선고 2021나202951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태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

담당변호사 배구량, 최성훈

변 론 종 결 2022. 1. 19.

판 결 선 고 2022. 2. 16.

제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7. 1. 선고 2020가합34035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 B은 원고에게 18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9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7. 3. 22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

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2. 22. 접수 제296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,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
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[고쳐 쓰는 부분]

○ 제1심 판결이유 중 제5면 19행부터 제6면 19행까지를 아래와 고친다.

“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고, 원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
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
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한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
없다.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이에
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않고, 이 경우에는 증거에 의해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
그 원본이 진정하게 만들어졌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
증거가치는 없다(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0다66133 판결,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
2009다96403 판결 등 참조).

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고, 피고 B은 그 문서를 본 적도 없다면서 원본의
존재와 진성성립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. 원고는 1심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서 원본을
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원본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다가 이 법원 제1회
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원본이라는 문서를 제시하였으나,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
원본으로 제시한 문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기재되고 일부 날인이 된 사본에 추가로
날인하고 간인한 부분이 섞여 있었고, 특히 위 문서의 작성자란에 해당하는 매도인, 매수인, 시행사

부분에 있는 날인과 무인은 모두 사본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.

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 피고 B와 관련된 매도인 부분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달리 원본의 존재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,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보증채무 성립에 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.”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영주, 판사 김형배, 판사 김종기

(별지)

목 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서울 강남구 G에 있는 U건물

[도로명주소] 서울 강남구 H

철근콘크리트조 지하2층 지상2층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

지하2층 245.15㎡

지하1층 171.73㎡

1층 171.73㎡

2층 172.22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서울 강남구 G 대 347㎡

(전유부분 건물의 표시)

건물번호: V

건물내역: 철근콘크리트조 77.9㎡

(대지권의 표시)

대지권종류: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비율: 347분의 54.31. 끝.

